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론에서 실천으로, 다시 이론으로

李 國 運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I.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유형론

이 글의 목적은 2012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적 법학연구를 추구함에는 근본적인 난점이 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의 모토를 저버리지 않는 한, 예컨대 로마가톨릭교회와 같이 단 하나의 눈에 보이는 제도적 보편 교회를 법의 공동체적 기초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모든 인간이 언제나 신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로,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인식한다. 인간 사회에서 법이 줄곧 사회적, 공동체적 실체로 이해되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점은 법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서 난감한 상황을 야기한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법의 본질과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인가? 프로테스탄티즘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 법학연구 또는 그 기초로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이 출발하는 지점은 바로 이 곤혹스런 질문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시도에서 가장 먼저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하나의 눈에 보이는 제도적 보편 교회를 법의 공동체적 기초로 상정하는 로마 가톨릭시즘의 입론이다. 자연법론이든 법실증주의이든 교회의 영적 본질을 전제하지 않는 법이론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출발점에서부터 같이 갈 수 없다. 주지하듯 프로테스탄티즘은 단 하나의 눈에 보이는 제도적 보편 교회를 부인하여 발생하는 빈 공간에 성서를 배치하고, 성서의 해석을 통하여 신앙의 방향과 원리와 지침을 확인한 뒤, 그것을 기초로 신앙공동체를 재조직하고자 한다. 그러나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와 같은 성서해석주의는 결코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이 원초적으로 발생시키는 개별화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¹⁾ 프로테스탄티즘은 성서해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개별화되는 역사적 교회의 복수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은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법도그마가 아니라 복수의 법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기 위한 출발점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이론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먼저 성서가 세상의

1) 알리스터 맥그래스, 기독교-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박규태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9

인정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사랑의 신법, 즉 복음)을 선언한다고 믿고 이를 체계화하여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대안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구약성서의 십계명에서 시작하든, 신약성서의 산상수훈에서 시작하든, 이러한 입장은 비신앙적인 세계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실제로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이 입장을 <창설주의>로 부르려고 한다. 다음은 성서(특히 신약성서)가 요구하는 신앙공동체를 오로지 복음에 기초한 전적인 은총의 공동체로 이해하여 법의 세계를 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은 전적인 은총의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세속적 실존, 특히 국가의 관점에서 신법이 아니라 인정법으로서 정당화되지만, 그조차도 인정법을 용인한 신의 주권에서 다시 신학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소위 두 왕국론으로 잘 알려진 이 입장을 나는 <분리주의>로 부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복음에 기초한 전적인 은총의 공동체를 찬양하면서도 세속적 실존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제3의 입장이 존재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자의 연결고리인데, 이는 흔히 국가와 교회의 관계 문제 또는 신법-자연법-인정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나는 이 입장을 <관계주의>로 부르려고 한다.

<창설주의>, <분리주의>, <관계주의>의 세 유형과 함께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복음, 즉 사랑의 신법과 인정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구성적 접근>과 <성찰적 접근>을 대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인정법을 구성하는 복음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정법을 성찰하는 복음의 소극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는 결국 <구성적 창설주의>/<성찰적 창설주의>, <구성적 분리주의>/<성찰적 분리주의>, <구성적 관계주의>/<성찰적 관계주의>의 여섯 유형을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유형들로 상정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 각각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구성적 창설주의>에는 거대한 제도적 교회조직 내부에 사실상의 교회법규를 만들어내려는 입장을, <성찰적 창설주의>에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실제로 창설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법에 대한 복음의 초월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구성적 분리주의>는 인정법의 신학적 정당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법에 대한 복음의 전면적 지배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성찰적 분리주의>는 인정법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반성적 단계에서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을, <구성적 관계주의>는 인정법의 복음적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성찰적 관계주의>는 인정법의 독자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복음의 기능을 가능한 한 성찰적 차원에 국한시키려는 입장을 거론할 수 있다.²⁾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본질은 이와 같은 여섯 유형의 공존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 한다. 나아가 여섯 유형들 사이에서 더 많은 하위 유형들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유형론에서 출발하여 나는 이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역사적 맥락

2) 이러한 유형론은 한국 사회의 기독교적 법학연구를 암암리에 규정해 온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례에 대한 리처드 니이버의 다섯 개의 유형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니이버의 유형론은 로마가톨릭시즘을 포괄하고 있는 까닭에 프로테스탄티즘을 전제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논의의 범위를 프로테스탄티즘을 포함한 기독교 전통 전체로 확장할 경우에는 니이버의 유형론의 적합성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리처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7 참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법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은 이 문제 자체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다.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19세기 말 도래한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들로부터 유래했다. 남북전쟁 이후 복음주의적 대각성에서 출발하여 미국 사회의 전면적 재건을 주장했던 이 신앙적/신학적 프레임은 이후 친미와 개화, 반공의 시대정신을 선도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 사회 자체의 중심에까지 성장했다.³⁾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법은 빠져 있었다. 그 이유는 구한말 이후 한반도에서 전통법을 대체한 서구법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이나 신학과는 전혀 다른 계보, 즉 독일 제2제국의 법체제를 모사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기제로서 한국 사회에 도래했기 때문이다.⁴⁾ 오늘날까지도 한국법이 일체에 의하여 이식된 소위 식민지적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법학자들을 진단⁵⁾이 옳다면, 이와 같은 이질적 도래성, 즉 미국에서 도래한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신앙/신학과 독일-일본을 거쳐 도래한 법적 인프라의 공존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에 가까운 전자의 지향성과 상대적으로 질서와 권위의 이념에 가까운 후자의 지향성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법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적 도래성의 문제는 한국의 교회와 국가, 나아가 한국 사회 그 자체의 가치정향적 모순에 관하여 더욱 입체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그러한 가치정향적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률가들, 그 중에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적 법학연구를 추진하려는 일단의 법학연구자들이다. 나는 이들을 일단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로 지칭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유형론을 가지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분석해 보자. 미국에서 도래한 복음주의적 신앙/신학의 기조는 크게 보아 <창설주의> 또는 <관계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한국의 개신교회사에는 미국 선교사들의 <관계주의>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창설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곤 한다.⁶⁾ 나아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창설주의>는 제도적 개신교회조직을 중심으로 성찰적 접근보다는 구성적 접근에 더욱 익숙해졌다. 오늘날에도 한국 개신교회조직을 이끄는 절대 다수의 지도자들이 <구성적 창설주의>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이들은 제도적 개신교회조직을 복음(사랑의 신법)을 기초로 자체의 인정법을 만들어내는 대안공동체로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⁷⁾

이에 비하여 독일-일본을 경유하여 한국 사회에 도래한 서구법은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서 출발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분리주의>를 전제하며 법의 세속성과 국가성을 전제한다. 앞서

3)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푸른역사, 2009 등 참조

4)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박영사, 1981 등 참조

5) 특히 한국법사학회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5월 12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던 학술대회의 자료집 “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유산의 극복”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김창록, 한인섭, 윤철홍, 김용욱, 최종고 교수 발표)

6) 이에 관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로는 안종철,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 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2008년 8월

7) 물론 여기에는 한국 개신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목회주의(secular pastoralism), 즉 제도적 교회조직 내부에 학교, 병원, 봉사조직, 미디어, NGO까지 다 두려는 특유의 목회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해왔음을 감안해야만 할 것이다. Kuk-Woon Lee, Christian Jurisprudence in a Multi-religious and Rapidly Chaing Society-A Re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pp. 52-60 참조. (이 논문은 2012년 4월 6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열린 Religious Freedom in Asia-Comparative Perspective on a Fundamental Right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보았듯이 <분리주의>는 원래 법의 세속성과 국가성까지도 신의 주권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⁸⁾ 그러나 1848년 2월 혁명에 따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의 실패 이후 독일법사에서 이러한 법신학적 정당화는 법체제 바깥으로 밀려나며,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2제국은 <세속적 국가주의>의 관점으로 이탈한다. 이를 계수한 일본 제국주의는 메이지헌법의 제정(천황제)을 통해 세속적 국가주의에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결합시켜 국가종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독일의 경우에도 히틀러의 제3제국에 이르러 독일 제국교회(루터교회)의 법신학은 최소한의 비판적 접근마저도 포기한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서구법이 한국 사회에 도래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의 규범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독립과 해방, 자유화와 민주화를 거쳐 대한민국이 성숙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법적 인프라 속에는 <세속적 국가주의>의 기본적 관성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처럼 간략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률가들이 처해 있는 참으로 애처롭고도 엄혹한 상황이다. 매 주일마다 또는 매 성경공부마다 이들은 <구성적 창설주의>를 선포하는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의 요청에 침묵으로라도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의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개신교회 조직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변호사사무실이든 법학교육기관이든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직업적 공간에서는 <세속적 국가주의>가 숨 돌릴 틈 없이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이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이름으로 세속적 국가주의에 맞서는 일은 좀처럼 시도되지도 않지만, 시도되더라도 어떤 승산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이 승산 없는 투쟁을 거듭하면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률가들은 비판과 체념을 오락가락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 대다수는 스스로 모순적인 실존적 정치노선을 개척한다. 그것은 바로 <구성적 창설주의>와 <세속적 국가주의>를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관심의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교회에 가서는 전자에 동의하고 직장에 가서는 후자에 동의하는 동시에 교회에 가서는 후자에 관해 침묵하고 직장에 가서는 전자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률가들은 누구나 다 엄격한 분리와 침묵으로 유지되는 이 실존적 정치노선을 몸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의 출발점은 <구성적 창설주의>와 <세속적 국가주의>의 이중적/위선적 자기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구성적 창설주의>를 선택하여 제도적 개신교회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거나(즉, 목회를 하거나), <세속적 국가주의>를 선택하여 신앙적 냉담자의 오명을 받아들이는(즉, 날라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자택일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신학적 고민을 털어버린 프로테스탄트 법률가들을 교회 주변이나 법조 언저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에게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은 오로지 구호로만 또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이들과 달리 어떻게 해서든 <구성적 창설주의>와 <세속적 국가주의> 사이에서 신학적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법률가들을 나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로 지칭한다. 이들이 느끼는 일차적인 감정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다. 이제 나는 이 외로운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혐로를 개척했는지 또는 개척하려다 포기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한정되어 1970년대 이후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린다. 다만, 그 이전에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정을

8) 루터 법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김대인,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4권 2호, 2009 참조

첨언하면서, 앞선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별도의 논의 또는 증언을 부탁드리고 싶다.

III.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외로운 길 : 1970년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스케치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 중반에 법과대학을 다닌 세대는 대체로 해방동으로 불린다. 식민지시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한국 전쟁기에는 아주 어렸던 이 세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거의 최초로 생존을 위한 극한투쟁에서 벗어나 일상의 정상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세대로 꼽을 수 있다. 이 세대의 법학연구자들 가운데서 한국 사회의 제1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채택한 공통적인 진로는 식민지 근대성의 원흉으로 지목된 일본법을 뛰어 넘어 독일법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었다.⁹⁾ 독일법으로부터 일본법을 거쳐 한국법이 조성되었으니, 일본법보다는 독일법을 곧바로 공략하는 것이 정공법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 이 세대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독일 유학을 감행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

1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인물은 최종고 교수이다. 그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 조류를 민첩하게 흡수하는 동시에 소위 '상관신학(Und-theologie)'의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룬 석사학위논문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후 독일 법철학의 자연법적 진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구스타프 라트브루흐의 주저 법철학을 유려한 국문으로 번역한 것도 그렇다. 잠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다녔던 것도 그렇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것도 그렇다. 그가 유학한 독일 남단의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은 에릭 볼프로 대표되는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 곳에서 그가 연구하여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은 한국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귀국한 뒤 최종고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면서 특히 서양법제사와 구한말의 서양법 수용사, 그리고 종교법분야에서 정력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관점에서 이 작업은 독일법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적 전통을 확인하고, 일본법을 우회하여 한국법과 서양법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현실적 접점을 마련하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읽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의 어느 시기부터 최종고 교수는 갑자기 이 모든 노력을 중단한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러 분야를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관점에서 엮어 보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이 시기 그의 소회는 1986년 기독교사상에 실린 '신학과 법학'이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 이해된 바대로는 예수는 법적 평가의 무본질성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예수는 법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러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것을 ‘사랑’으로 선포한 분이 다. 개개인의 위에 있는 법질서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9) 대표적으로 김일수 교수의 “한국 형법” 초기의 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10) 최종고, 김일수, 김상용, 이형국 교수와 나중에 정치가로 대성한 황우여 판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의 사랑의 말로써만 공동 생활이 종교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공동체는 본질에 있어서 법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¹¹⁾

왜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기획을 스스로 내려놓고, 어쩌면 가장 정반대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의 무본질성(wesenlosigkeit)테제를 회한을 담아 토로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최종고 교수를 은사로 모시면서도 내 자신 감히 여쭙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나는 그동안 내 나뉠의 관찰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정할 뿐이다. 첫째, 한국 개신교회조직의 무모하고 반지성적인 <구성적 창설주의>에 질렸으리라는 점. 둘째, 단지 독일의 당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독일 법이론 전체를 섭렵한 뒤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원류에 도달하여 다시 그로부터 현대 법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한다는 학문적 과제 자체의 무게에 눌렸으리라는 점. 셋째, 설사 것처럼 원대한 학문적 과제를 완수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원류인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이 <분리주의>의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리라는 점. 물론 이 세 이유는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추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최종고 교수가 한국법과 서양법, 나중에는 동아시아법 등을 대상으로 인정법과 인정법 법률가들의 자취를 수집하는 인문주의 법사상사학자로 급속히 변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전제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유형론에 의거할 때, 최종고 교수의 이와 같은 변모는 <관계주의>의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에 뛰어 들었다가 독일법을 지배하는 <분리주의>와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창설주의> 사이에서 십여 년 만에 학술적 에너지를 소진당하고만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성찰적 분리주의>를 거쳐서 아예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최종고 교수의 모델은 이후 본격적으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추구했던 두 기초법학자에게도 강한 영향을 남겼다. 1990년 최종고 교수의 영향 하에(논문심사위원) 에릭 볼프의 법사상을 연구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법신학분야의 법학박사학위를 취득¹²⁾한 지승원 목사는 이후 십 수 년 동안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빈민목회에 헌신¹³⁾한 뒤, 2003년에야 한동대학교 법학부에 법철학 및 기독교법사상 담당 교수로 부임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개고하여 ‘법률인-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신학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논쟁으로 대신했다. 이 점에 관하여 “21세기의 법신학”은 “전혀 새로운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로 모른다”고 언급하는 지승원 교수의 입장에서 <창설주의>나 <관계주의>의 함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¹⁴⁾

또 한 명의 기초법학자는 1993년 최종고 교수의 지도 아래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진웅희 목사이다.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 독일에서 벌어진 마르틴 루터 법사상의 역사적 결과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하여 에릭 볼프와 자크 엘룰을 중심으로 현대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살펴본 뒤, 저자 자신의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정립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맥아를 탐구하려는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¹⁵⁾ 그러나 이처럼 인상적인 석사학위논문에도 불구하고, 진웅희 목사는 이후 박사과정

11) 최종고, 신학과 법학, 기독교사상 1986년 8월호, 172면에서 발췌 인용

12) 지승원, 법에 있어서의 인간-에릭 볼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0

13)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승원, 공동체 내 소집단의 자기 정체성 이해와 ‘정의의 원칙’: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011년 가을/겨울, 통권 40호 참조.

14) 지난 10년 동안 가까이에서 관찰한 결과로 나는 지승원 교수를 <성찰적 분리주의>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유학하여 결국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가 석사학위논문의 말미에서 <관계주의>, 그것도 <구성적 관계주의>의 방향을 강하게 암시했던 것을 감안할 때, 진웅희 목사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창설주의>, 그것도 <구성적 창설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제도적 교회조직에 들어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종고 교수 및 그 뒤를 이은 지승원, 진웅희 목사가 나아갔던 방향과 달리, 다수의 한국 사회의 제1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은 좀 더 안전하지만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다. 김일수 교수와 김상용 교수로 대표되는 이들의 진로는 각기 형법학과 민법학이라는 실정법 분야를 선택하여 일단 그 속에서 실정법 도그마틱을 대상으로 법신학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었다.¹⁶⁾ 기실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가치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학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실정법 도그마틱 속에서 배어들지 못한다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 점에서 이들이 선택한 진로는 일단 실정법학자가 해당 실정법 분야에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전통적인 방식인 실정법 교과서 시리즈를 완성함으로써, 기존의 실정법 해석론에 대하여 자신들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입각한) 실정법 해석론을 맞세우려는 것이었다.¹⁷⁾ 이와 더불어 이들은 각 실정법학의 영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이 잘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 해석론 상으로도 세계관적 결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정법 해석론의 차원을 극복하고자 했다. 예컨대, 사형제도, 피해자학, 교회재산(종유재산)의 본질 등에 관한 김일수, 김상용 교수의 연구 논문은 이와 같은 <구성적 분리주의>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¹⁸⁾

현재의 시점에서 김일수, 김상용 교수가 각기 형법학 및 민법학의 영역에서 쌓아 온 실정법 해석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적 구조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기도 하려니와 헌법학자인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나는 다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그와 같은 정당화가 오래지 않은 장래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만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서구법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기본 동기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실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개념, 원리들을 따져 들어가면 오래지 않아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차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둘째는 김일수, 김상용 두 교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제2세대의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자들에 의하여 <구성적 분리주의>를 벗어나 <성찰적 관계주의>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기 위 두 교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김두식과 김성은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전망을 가지게 만든다.²⁰⁾

15) 진웅희,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1993. 나는 국내 저자가 저술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 관련 문헌들 가운데 정보의 양과 신학적 깊이에 있어서 아직까지 진웅희의 석사학위논문을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최종고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각기 본격적인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영역을 이탈한 뒤, 이 분야에 법학자가 저술한 관련 문헌으로는 변종필, 개신교는 자연법을 어떻게 보는가, 기독교사상, 1996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16)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법 분야의 윤철홍 교수와 경제법 분야의 권오승 교수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로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오승 교수는 김일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 법률가운동에도 정력적으로 참여했다. 권오승, 법으로 사랑하다-은혜받은 법학교수의 이웃사랑 이야기, 홍성사, 2010 참조

17) 앞서 언급했던 김일수 교수의 한국 형법 교과서 시리즈와 김상용 교수의 민법 교과서 시리즈를 말한다.

18) 예컨대, 김일수,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와 기능, 피해자학연구 2호, 1993 ; 김상용, 교회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검토, 법조 645호, 2010년 6월호 등 참조. 한편 김일수 교수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입각한 자신의 법철학적 입장을 내세우는 법학관련 수상집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후술하는 프로테스탄트 법률가운동을 포함한 개신교 사회운동 일반에도 정력적으로 참여했다. 김일수, 사랑과 희망의 법, 교육과학사, 1992 ; 법, 인간, 인권, 박영사, 1990 등

19) 이국운,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제11권 제2호, 2006. 6. ; 헌법, 책세상, 2010 등

20) 예컨대, 김두식, 무엇이 범죄인가?-범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618호, 2008년 3월호 ; 김성은,

IV. 기독교적 법학교육운동 및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의 도전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추진과정은 결코 방금 언급한 프로테스탄트 실정법 주석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속적 국가주의>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온 국가법영역에서 프로테스탄트 실정법 주석학자들이 입지를 마련하기에는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구성적 창설주의>가 압도하는 프로테스탄트 제도적 교회조직 내부에는 적어도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정당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법 사이에는 이질적 도래성으로부터 유래한 근본적인 가치정향적 모순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은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적 창설주의>와 <세속적 국가주의>의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었는가?

주지하듯 1980년대 이후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지식사회 내부에는 기독교세계관운동 또는 기독교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프로테스탄트 지식인운동이 있었다.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 운동의 기본 방향을 제도적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을 지배해 온 <구성적 창설주의>로부터 <구성적 관계주의> 쪽으로 프로테스탄트 지식인집단의 가치정향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지식인운동의 기본 방향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법학연구를 추진하는 노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제1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포기 또는 전향하거나 실정법 해석론으로 물러서는 1990년대 중반의 특수한 지식적 조건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추구를 일종의 기독교적 사회운동으로 우회하게 만든다. 그 하나는 기독교적 법학교육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이다.

1. 기독교적 법학교육운동 - 한동대학교를 중심으로

1995년 개교한 한동대학교는 1998년 법학부를 출범시키면서 두 가지 모토를 내세웠다. 기독교적 법학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것과 글로벌 법학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토는 곧바로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lawyers without borders)이라는 비전으로 제시되었다.²¹⁾ 이 비전은 당시 한국 사회의 기독교법률가들이 ‘일곱 날 모두를 헌신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실력 없는 법률가로 전락하는 공포’와 ‘하루만 헌신하고도 축복 받은 기독교법률가로 행세할 수 있는 유혹’ 속에서 번민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그리고 기독교법률가들이 단순히 ‘기독교를 신앙하는 법률가’(a lawyer who is a Christian)가 아니라 ‘법률가직을 소명으로 받은 기독교인’(a Christian who is a lawyer)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법률가의 준거를 주권적 국민국가에 독점시켜온 서구 근대문명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략으로 국경을 넘는 법률가의 비전은 한국 사회 안팎의 기독교법률가들이 효과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상적-조직적-교육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²²⁾

지공주의와 성경의 토지법, 신앙과 학문, 제16권 제3호, 2011. 9 등

21) 이국운,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 통합연구, 제14권 1/2호(통권 37호), 2001년 가을, 185면 이하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이 제시되던 2001년의 시점에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체제에는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었다. 그 핵심은 미국식 로스쿨체제를 도입하여 종래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었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에 기초하여 한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독특한 실험이 감행되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99년 개략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2000년 7월 교육부 인가를 획득한 이후, 2002년 2월에 개원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Th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은 동아시아에 설립된 첫 번째 국제법률대학원으로서 2010년까지 총 114명의 미국변호사를 배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HILS의 설립과 운영은 초대 원장이었던 린 버저드(Lynn B. Buzzard) 교수를 비롯하여 1970년대 이후 기독교적 전문법학교육운동을 추구해왔던 미국의 기독교법률가회(Christian Legal Society)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동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HILS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품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이다.²⁴⁾

로스쿨체제 하에서 국내적 단위의 기독교적 법학교육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HILS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의 기독교적 법학교육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HILS는 비단 미국변호사를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전문법학교육을 실험하는 장이자, 세계 각국의 기독교법률가들이 전문법학교육을 통해 연대하는 장으로서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유무형의 성과들을 산출하고 있다.²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ILS의 기독교적 법학교육이 여전히 한국의 법학도들을 미국법으로 훈련시켜 미국변호사의

22) 이하의 서술은 이국운,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재론,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제5회 국제 기독교대학 학술대회 논문자료집, 2011. 6. 22-24, 129-155면 중 132면 이하를 활용한 것이다.

23) 로스쿨제는 좁은 의미의 법학교육체제를 개혁하는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사법조직 전체를 프로페셔널리즘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민주적 법전문직 프로젝트’였다. 주지하듯, 지난 십년 동안 이 프로젝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라는 형태로 법제화되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배출될 2012년을 기점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모든 구성부분은 향후 30년 동안 민주적 법전문직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법학교육에 관하여 로스쿨체제의 출범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총입학정원(연간 2000명) 내에서 이루어진 로스쿨 인가획득경쟁에서 오로지 기독교계 사립대학들 중 일부만이 법률가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연세대, 이화여대 등). 로스쿨체제 하에서 학부 법학교육의 미래가 암울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그동안 학부 법학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법학교육에 참여해왔던 대다수의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숭실대, 계명대, 한남대, 전주대 등)이 공식적인 법률가양성과정에서 배제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이 기독교적 법학교육이 제대로 추진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압도적 다수의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에게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제도적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버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협을 발생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성공한 소수의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이 기독교적 법학교육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은 완전히 고사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4) HILS는 초기부터 국경을 넘는 기독교법률가들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었다. 2000년 당시 HILS의 비전선언문을 보라. <Our vision>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will be the academic center for ‘Lawyers without Borders’, educating global Christian lawyers for the world who embody excellence in both legal academics and moral character, in particular, honesty and servic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will send forth lawyers who are; Honest legal practitioners serving the people by overcoming cultural barriers due to ethnicity, language, gender and religion through the Holy Spirit for the glory of God.; Honest legal experts resolving unprecedented issues in the Cyber world with the innovative integration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Honest legal scholars reestablishing the true purpose of legal science and rebuilding the destroyed biblical foundation of law with devotion and sincerity.

25) HILS는 개교 이래 매년 50명의 내국인 정원 이외에 10명 내외의 외국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Advocates International과 같은 기독교법률가들의 국제조직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이 한국-미국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자격을 갖추게 하는 단순 모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HILS는 개원 10년을 맞이하여 졸업생들이 단순히 미국변호사자격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는 기독교법률가들의 구체적인 사역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이나 교육적 기반에서 출발하여 국제적인 기독교법률가운동의 조직적-사상적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로스쿨체제 하에서 국내에서 하루바빠 기독교적 전문법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시도할 필요도 다분하다.

2. 기독교적 법률가운동 - 한국 기독교법률가회를 중심으로

지난 십년 동안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영역에서 HILS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한 성과라면,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의 영역에서는 단연 한국기독교법률가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 CLF)의 활동을 핵심적인 성과로 꼽아야 할 것이다.²⁶⁾ 1995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법률가모임에서 출발하여 1999년 개혁적 복음주의에 기초한 기독교법률가운동단체로서 1999년 새롭게 출범한 CLF는 기독교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대안적 삶의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법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매주 정례 모임을 가지면서 기독교적 법실무를 실천하는 기독교로펌운동, 기독교법률가 전국대회 개최운동 등과 함께 연구분과, 생활공동체분과, 사회분과, 선교분과, 예비법률가분과 등으로 나누어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²⁷⁾

이전까지의 기독교법률가운동이 법원, 검찰, 사법연수원 등의 신우회 차원에 머무르거나 일부 대형 지역교회의 전문사역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던 것에 비하여 CLF의 활동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CLF가 일찍부터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법실무의 실천을 모토로 기독교로펌(소명 등)을 설립함으로써 삶의 전 영역이 공유되는 기독교법률가운동의 토대를 구축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될만하다. 기독교적 법실무에 기초한 기독교법률가운동은 장차 로스쿨체제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변호사집단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투철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법률가운동을 전개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시의 신화에 기대어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가집단 내부에서 CLF가 전개하는 윤리적 법률가운동은 거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스쿨체제 하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을 고려할 때, CLF의 활동들 가운데 최근 각 로스쿨을 중심으로 예비법률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그것만이 유일하게 전문적인 법학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로스쿨의 CLF 모임에서 활용되는 교재, 도서²⁸⁾, 사역매뉴얼 등을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개발하여 수시로 보완하고, 기독교법률가 전국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모임들을 교육 과정에 대응하여 구성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가까운 장래에 기독교계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체제 하에서 기독교적 전문법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도된다면, CLF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인적, 물적 성과는 고스란히 그 토대이자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26) 물론 그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 법조선교회를 통한 제도적 교회조직의 지원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7) 자세한 것은 CLF의 홈페이지(<http://www.clf.or.kr/>)와 2011년도 기독교법률가회 회원총회 자료집(2011. 2. 19. 서울 강남구 도곡동 기쁜소식교회 개최) 참조

28) 조셉 알레그레티, 법조인의 소명, 전재중/심동섭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 마이클 슈트,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정옥배 역,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0 등 참조

V.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전망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추구가 기독교적 법학교육운동과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으로 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의 실천적 지향성이 다시금 이론적 지향성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하에서 나는 일단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HILS와 CLF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법학교육운동과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이 공히 한국 사회에 대한 법신학적 관심 및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신학적 관심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독교적 법학교육과 법률가운동 모두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들을 통하여 축적된 기독교적 법학교육 및 법률가운동의 토대가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물질 토대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단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 공동체적 에너지가 결집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둘째, 이론에서 실천으로 중점이 옮겨 온 지난 20년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법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롤드 버만의 연구 성과를 탐색한 김철 교수³⁰⁾, 기독교적 정법론의 토대 위에서 진보적 법학운동을 이끌어 온 강경선 교수³¹⁾,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헌법적 연구를 축적해 온 송기춘 교수³²⁾, 기독교적 분쟁해결운동에 헌신하면서 이자제한법 분야에서 성과를 낸 신은주 교수³³⁾, 프로테스탄티즘과 근대적 헌정주의의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한 이국운 교수³⁴⁾, 기독교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조명한 김두식 교수³⁵⁾, 초기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근

29) 물론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CLF의 활동 가운데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률가집단을 일차적인 사역대상으로 삼아온 것에서 드러나듯이, 지난 십 년 동안의 활동이 지나치게 국내적 시각에서 진행되었던 점은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CLF의 자매단체로서 기독교 법률가들의 국제교류와 법률선교에 주력했던 Advocate Korea(AK)와 사역의 방향을 분담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최근 수년간 활동역량이 급격히 축소된 AK를 지원하고, 나아가 국제교류와 법률선교 차원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탈국가적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LF가 그동안 일부 회원들의 수고를 통해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난민지원사역을 본격화하기 위해 서울 공익법 센터 APIL(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CLF, 위의 자료집(2011), 63면 이하 참조)

30) 김철, 칼뱅주의와 법에 대한 사상사: 윌리엄스의 정교분리원칙, 현상과인식 2009년 가을호 등

31) 강경선 교수는 제도적 교회조직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법학운동 내부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 가운데 매우 이채로운 존재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 일단 강경선 자신의 연설문과 이재승의 논문을 볼 것. 강경선, 기조발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년-포기를 통해 이루는 성취,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 ; 이재승, 바야 콘 디오스, 민주법학 제47호, 2011. 11

32)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민주법학 제37호, 2008. 9. 등

33) 신은주, 이자제한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법과사회 제22호, 2002 등

34) 위 각주 19)의 문헌 및 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맥락에서, 법철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 법과 '이웃'-법치의 본원적 관계형식에 관한 탐색, 법과사회 제36호, 2009 등

35)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앤조이, 2002 등. 이 책은 이후 평화의 얼굴-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2007로 개정되었다.

대 이성법의 초월적 근거를 추적한 홍기원 교수³⁶⁾, 법조윤리의 성서적 근거를 탐색한 한철 교수³⁷⁾, 사형제도의 신학적 근거를 재평가한 김상균 교수³⁸⁾,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을 재해석한 김대인 교수³⁹⁾ 등의 연구 성과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로는 20년 만에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영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숭실대, 2011)한 김정우 박사⁴⁰⁾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참여의 가치를 분석한 민윤영 박사⁴¹⁾ 등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 방향은 각기 상이하나 적어도 한국법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국가주의>를 벗어나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의 다양한 유형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서구법이 도래한 독일-일본의 경로를 우회하여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을 추구하는 방향이 미국법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HILS와 CLF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미국의 기독교 법률가운동 및 기독교 법학연구운동과 직접 연결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⁴²⁾ 1990년대 이후 미국 법학계에서 법과 종교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적 법학연구 또한 상당히 강화되고 있음⁴³⁾을 고려할 때, 이처럼 한국 사회의 제2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이 미국 법학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호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하게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의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기독교적 법학연구와 법학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조윤리의 영역에는 실천적으로도 기독교적 법학연구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많다.⁴⁴⁾ 그러나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리버럴 아츠로서의 법학(Law as Liberal Arts in Christian Perspective)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단위를 건설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⁴⁵⁾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비유컨대, 그 목표는 소송기술을 갖춘 중인(中人)으로서의 변호사를 양성할 뿐이다. 판사, 검사, 법학자, 기타 고위정책결정과정의 공적 법률가들은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 가운데서 선발되며, 이들은 통상의 변호사들보다 고도의 인격성, 세계관적 식견 및 광범위한 법적 분쟁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종적 분쟁해결자, 최종적 정책결정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중인(重人)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36) 홍기원, 초기 칼비니즘의 정치사상 연구서설-신법과 인법, 그리고 최선의 정부형태, 법사학연구 제36호, 2007 등

37) 한철, 법률가 모델로서의 '고용된 총잡이'를 넘어서-성서적 법조윤리를 위하여,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3호, 2009. 12. 등

38) 김상균,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1집, 2008 등

39) 위 각주 8) 참조. 이 논문은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리처드 니이버의 유형화 및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이 <구성적 관계주의>의 관점으로부터 분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40) 김정우, 루터의 종교 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41) 민윤영,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참여,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1

42) 예를 들어 기독교세계관동역회가 발행하는 월드뷰 2011년 12월호에 실린 로버트 코크란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정리 이국운) 참조

43) 미국에서 기독교적 법학연구의 현황에 관한 논쟁적인 정리로는 다음의 두 논문을 볼 것. David A. Skeel Jr., The Unbearable Lightness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57 Emory Law Journal 1471, 2008 ; David S. Caudill, On the Rhetorical Invention of a Failed Project: A Critical Response to Skeel's Assessment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40 Seton Hall Law Review 971, 2010

44) 김일수, 법조윤리교육의 철학적 기초, 고려법학 제53호, 2009 참조

45) 이하의 논의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국운, '로스쿨제도의 시행은 한동대학교 법학부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한동대학교 법학부 좌담회 발표자료, 2007. 9. 13) 참조.

중인(中人)이 아니라 중인(重人)으로서의 법률가수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학부에 설치하는 것이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서양의 지적 전통 속에서 법은 원래 인문교양의 핵심이었다. 볼로냐대학이나 파리 대학과 같은 초기의 대학들에서 법학이 학문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계몽적 과학주의의 대두와 함께 법의 과학화가 진척되고, 근대의 국민국가들이 법치주의에 내세워 법률가들을 충원하기 시작하면서, 법은 급격히 변호사 또는 사법관료들의 소송기술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로스쿨체제는 소송기술의 전수과정으로서의 전문법학교육을 대학원차원으로 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인문교양의 핵심으로서의 법의 자리가 복권될 수 있다. 인문교양의 핵심으로서의 법은 결국 세계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시험체제 및 국가적 실정법의 율타리 속에 간혀야만 했던 종래의 법적 사유가 그 지평을 뛰어 넘어, 다양한 세계관적 기반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이는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법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 법제도, 법적 현실에 관한 기독교적 반성 및 성찰이 보다 전면적으로 시도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리버럴 아츠로서의 법학과정에서는 로스쿨에 진학해서 배울 실정법학의 세세한 국면을 미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들, 그러나 판사, 검사, 법학자, 고위정책결정과정의 공직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고 경험해야 할 것들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재음미되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① 법의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 윤리적 기초 ② 법, 법제도, 법적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③ 법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의 대요 ④ 법에 관한 비교적, 사회과학적, 문화적, 이론적 탐구 ⑤ 법적 현실에 관한 사례분석 및 체험학습-팀 프로젝트 및 현지조사 ⑥ 법적 소통을 위한 연습-작문 또는 변론 ⑦ 외국어능력의 혁신 ⑧ 로스쿨 진학을 위한 실제적 준비 등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리버럴 아츠로서의 법학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문교양으로서의 법을 사랑하고 법학 그 자체를 즐기는 기독교법학자들이 중심에 서야만 한다. 현재의 법제도를 숨겨 있게 소개할 수 있으면서,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 윤리적, 비교적, 문화적, 이론적 접근을 넘나들며 구사할 수 있는 학문적 유연성을 갖춘 사람, 나아가 자신의 학문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성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총명한 학생들과 함께 땀구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는 기독교법학자들이 이 교육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립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나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리버럴 아츠로서의 법학과정이 제2세대와 제3세대 프로테스탄트 법신학자들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